

#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비교연구

서진석\*

## 요 약

민간경비원은 특별한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일반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은 그동안 업무영역의 확대를 가져와 제한적이지만 일부 법적 권한을 보유할 시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의 경비원 법적 지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현행 법인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 법적 지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 Private Security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status

Seo Jin Seok<sup>\*</sup>

## ABSTRACT

Private security guards are not given special legal privileges to the general public, and holds the same legal status. However,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been the expansion of business areas, but some legal rights to bring a limited time you can claim that. In this study, major countries such as Japan, the United States an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status of the security guards and private security guards in Korea about the legal status of the current law on the guards private security law Korea by analyzing the legal status of private security guards to the issue of the legal status and thereby derive an alternative proposes a purpose.

**Key Words:** Private security guards, comparative analysis, private security industry, private security law, legal status

## 1. 서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직접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라 정의할 수 있다.[1] 이러한 경찰 작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권력작용이기 때문에 경찰작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한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산업사회의 발전과 거대 사유재산가의 등장은 경찰작용 중 하나인 경비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공적인 경찰기관이 미치지 못하는 경비수요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경비산업이 그 수요를 담당하게 되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경비조직과 업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를 일반 사법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현행법제 하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충분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민간경비산업이 성장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2]

우리나라에서도 1953년 주한 미군의 군납경비의 형태로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산업이 도입된 이래, 1976년 ‘용역경비업법’의 제정과 80년대와 90년대의 양적 성장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비지도사 제도의 도입과 기계경비업의 괄목한 성장과 특수경비업의 도입 등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민간경비산업은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면서 한국 사회의 범죄 예방과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한국에서의 민간경비산업은 경찰과 함께 이제 사회질서유지라는 치안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극히 일부 경비업체가 노사분규 현장에 개입하고 폭력사태를 야기하여 경비업체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가 강화되기에 이르렀다.1)[3]

1) 구체적으로는 2012년 7월 27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의 (주)SJM에서 노조원과 경비업체 컨택터스 직원 간 폭력사태로 인해 경비업자(법인)을 대폭 규제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여러 건 19대 국회에 제출된 후 여야 합의로 개정되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이번 사건뿐 아니라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2011년 유성기업 사태 등 그동안 여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경비원 법적 지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현행법인 경비업 법상의 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 법적 지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방법으로는 관련 문헌연구에 의존하고자 한다.

## 2. 주요국가의 민간경비원 법적 지위에 관한 비교 분석

### 2.1 비교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민간경비 연구영역은 대상과 업무영역에 따라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각 대상과 영역은 공통성도 존재하지만 나름대로의 특징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화되고 보편화 된 이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나라의 민간경비 환경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환경적 차이에 따라 각각의 특징과 다양성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민간경비산업의 국제적 연계가 강화되고 있고, 국경을 초월한 마케팅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각국의 제도와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보편성을 갖춘 민간경비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무영역, 지역, 국가 간의 체계적인 비교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 민간경비에 관한 과학적인 이론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4]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비교민간경비연구를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2)

첫째, 각국의 시큐리티제도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교시큐리티는 여러 국가의 제도에 응용될 수 있는 이론과 그와 같은 이론으로 검증될 수 있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실적인 자료의 집합체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 시큐리티의 이론과 실천의 연관에 착안하여 상이점과 유사점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법치성을

러 곳에서 발생한 ‘용역폭력’을 차체에 봉쇄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2) 안황권의, 비교시큐리티제도론, p.23-24. 2007. 인용.

탐구해 내는 것이다.  
 셋째, 과거를 이해하여 미래의 흐름을 예측함으로써 정책을 입안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넷째, 자국 혹은 자신들의 방법이나 시스템을 개량할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하고, 기준이나 지식의 국제적 기준에 기여하는 것이다.  
 다섯째, 시큐리티라고 하는 특정분야의 지식을 다른 관련분야의 지식과 연계하는 것이다.  
 여섯째, 제 외국의 사람들이 자국의 시큐리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가를 아는 것이다.

**2.2 일본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법적 지위**

민간경비원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로 한다. 경비업무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15조는 ‘경비업자 및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이 법률에 의해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고 있지 않음에 유의하는 것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거나 개인 혹은 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에게 특별한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형사소송법상에 명시된 현행법 체포의 경우도 일본 형사소송법 제213조3)에 의한 법적 근거에서만 현행법 체포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형법상의 정당방위(형법 제36조)나 긴급피난(형법 제37조)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민간경비원의 행위는 현행법 체포시와 같이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미국과는 달리 일반인으로서의 법적 지위 이상의 특권이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간경비원의 법집행권한은 일반인의 재산관리권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으므로 민·형사상의 책임에 있어서는 순수 일반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취급된다.[5]

**2.3 미국 민간경비 관련법상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4)**

3) 형사소송법 제213조 ‘현재 범행을 범한 범인이나, 범행직후의 범인은 누구라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A.J.Bilek는 미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6]

첫째는 일반시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민간경비원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선서에 의해 임명되거나 경찰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임무의 위임이나 자격증을 받지 못한 상태의 법적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을 말한다.

둘째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으로서 학교, 공원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자들과 Governor, Sheriff, Municipality 등의 정부기관에 의해 특별한 경찰업무를 위임받은 민간경비원을 말한다.

셋째는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을 말하는 것으로 1980년 중반부터 미국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경찰관 신분으로 민간경비 분야에서 시간제 민간경비원(moonlighting)으로 일하고 있는 경찰관을 말한다.

특히 둘째 유형에서의 특별한 경찰업무를 위임은 가장 빈번한 법률행위로서 개인이나 민간경비원들에게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허용의 범위나 한계는 헌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법률로서 제한되고 있다.

민간경비원은 형법상 행위에 대하여는 첫째, 실력행사의 경우 특권이나 동의없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민간경비원에 의해서 발생될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신문과 질문은 사람이 법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경우 단순한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하여야 할 절대적 규정은 없다. 법원은 적절치 못한 심문이 그 자체로 범죄행위는 아니라고 하고 있는 반면에 불법체포나 불법 수색은 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셋째, 수색에 있어 경찰이 행한 수색과 개인이 행한 수색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민간경비원이 경찰과의 협조하에 활동하거나 또는 민간경비원을 “준경찰(quasi-police)”로 인정하여 주범이나 지방법의 권한 하에서 활동하지 않는 한 민간경비원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인과 동일하다.

민간경비원의 민사상 문제는 주로 불법행위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민간경비업자와 민간경비원과의 계약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불법행위법은 어

4) 이 내용은 이윤근 교수의 ‘한국 사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pp.26-31, 1989를 참고로 요약하였음.

는 정도 사적 행위의 특권과 면책권을 규정함으로써 사적 행위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미국의 초기 규정에 있어서 보통법(common law)의 민사법 원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다. 불법행위법은 민간경비원에게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경비원의 행위에 어느 정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경비원의 권한제한에 대한 규정은 오랜 소송을 거치면서 형성된 판례법에 의해 이루어졌고, 민사법에 있어서는 일방이 타방의 행위에 의하여 보상받아야 할 손실을 입었을 때는 언제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신체, 재산에 대하여 가해자의 고의를 증명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초래한 손해를 배상케하는 것이 민사법상의 근본취지라 하겠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도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리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법상 민간경비원의 권한범위와 전문적인 민간경비업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찰서비스의 활동영역에 대하여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민간경비업체와 민간경비수요자 상호 간의 계약조항에는 경비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 민간경비원의 복장, 민간경비원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수색 그리고 민간경비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조사활동 등에 대한 제한과 같은 다른 법체계와는 달리 엄격한 행위 기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법상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 3. 한국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민간경비원의 법적 성격은 사법적 규율의 대상이므로 사인적 지위에 불과하며, 민간경비 활동은 경찰작용(공권력 작용)과는 원칙적으로 상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원의 경비업무 수행과정은 경찰작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착오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7]

#### 3.1 민간경비원의 형사상 법적 지위

민간경비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범인체포 등의 행위는 형법 제276조5)의 체포, 감금죄를 구성하게 된다. 왜냐하면 민간경비원은 일반 사인의 법적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형법 제 21조)6)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밖에도 형법상 긴급피난(형법 제22조)7), 자구행위(형법 제23조)8) 등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 체포(형소법 제212조)9)도 정당행위(형법 제20조)10)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민간경비원이 형사소송상, 특히 수사활동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 등과 증거수집

5)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6)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7)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8)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9)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10)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수사관 수사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사인적 지위를 가진 민간경비원의 활동에 의한 증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증거가 직접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은 없고, 다만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에 의하여 증거로서 원용 될 경우 이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8]

### 3.2 민간경비원의 민사상 법적 지위

현행 「경비업법」 제 3조에 의하면,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율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설립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으며(경비업법 제4조), 법인 사무에 관한 검사·감독 등은 주무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경비업법 제24조). 이 외에 민간경비업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경비업법」은 민법상 사단법인과는 달리 행정처분(경비업법 제19조~21조), 벌칙(경비업법 제28조), 형의 가중처벌(경비업법 제29조), 양벌규정(경비업법 제30조), 과태료(경비업법 제31조) 등과 같은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상 중요한 법적 문제는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제2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 법리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9]

### 3.3 민간경비원의 행정적 통제

민간경비업자 및 민간경비원은 민간경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을 유의하고,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도 아니된다(경비업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

이 민간경비산업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그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적 통제를 가하고 있다. 이는 민간경비산업이 사회 치안 질서유지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공익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는 경비업의 허가(경비업법 제4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경비업법 제10조),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경비업법 제18조), 행정처분(경비업법 제19조~21조), 감독(경비업법 제24조), 벌칙(경비업법 제28조) 등이 있다.[10]

### 3.4 경찰·청원경찰·민간경비의 비교분석

민간경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앞에서 경비업법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경찰과 청원경찰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를 다시 한 번 살펴보려고 한다.

민간경비는 기본적으로 사인적 지위를 갖는 까닭에 그에 대한 규율 및 통제는 사법에 의하여 해결 될 수밖에 없다. 즉 민간경비작용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을 유의하고, “경비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경비업법 제7조 제1항)함으로써 경찰작용이 일반통치권에 의한 작용임에 비하여 민간경비작용은 사법상의 관리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찰, 청원경찰 그리고 민간경비의 각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민간경비의 기본적 지위는 사인적 지위에 불과하므로 오늘날 민간경비의 필요성 및 수요증가에 따라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 및 실효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를 단순한 사인이 아니라 경찰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하겠다. 물론 민간경비원의 준경찰적 지위확보와 이에 따른 국민의 권리와 자유보장을 위하여 행정적 통제의 강화를 적절히 조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11]

<표 1> 경찰·청원경찰·민간경비의 제반 비교표<sup>11)</sup>

구 분	경 찰	청원경찰	민간경비
이 념	공공성, 공익추구,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	준공공성, 준공익추구, 기관장 및 시설주의 요구범위내에서	기업성, 능율성, 이윤추구, 도급계약적 요구범위내에서
직 무 (권 한)	사회공공의 질서유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직무범위 ①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② 경비, 요인경호, 대간첩작전 ③ 치안정보수집, 작성, 배포 ④ 교통단속, 위해방지 ⑤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근무하는 경비구역내에서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수행	특별한 권한이 없음.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내에서 직무 수행. 직무수행시는 사인으로 적용됨. ① 정당방위(형법제21조) ② 긴급피난(형법제22조) ③ 자구행위(형법제23조)가 적용됨.
신 분	국가공무원. 연령, 계급에 따라 정년	민간인(18세이상-50세미만)	민간인(18세 이상) 특수경비원은(18세이상-60세미만)
직무범위	광역, 공적인 영역. 중요지점 설정 활동. 최근 사적인 영역으로 직무범위 확대 추세.	지정된 공적인 영역. 시설주가 지정한 시설물 및 지역	일정한 사적 영역.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최근 공적인 영역으로 직무범위 확대 추세
무기휴대	무기휴대 가능	근무지역에서만 무기휴대 가능	무기휴대 불가
손해배상	국가 책임(국가보상법)	시설주 책임 (원칙적 민사책임)	경비업자 책임 (민사책임)
교 육	-경찰간부 1년. -경찰비간부 24주 교육	-배치하기전 경찰교육기관에서 2주간 기본교육. -청원주: 매월 4시간이상 직무교육 -관할경찰서장(소속공무원 파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 실시	-경비지도사는 44시간의 법정교육이수 -경비원: 신입교육 28시간, 직무교육 월4시간 이상 -특수경비원: 신입교육 88시간, 직무교육 월6시간 이상

11) 서진석,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인천: 진영사, p.91.; 이윤근, '한국 사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63, 1989. 재구성

#### 4.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간경비에 관한 법적 문제는 사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 사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에 불과하다. Bittner와 같은 기능주의자들은 공공경찰과 민간경비의 차이를 법적 자격이나 권한, 정당한 물리력의 사용 등과 같은 경찰권의 행사 여부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구분방식에 따르면 민간경비원들은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경찰과 차별화 된다.

현행 경비업법에는 경비원들의 권한과 책임의 문제(현행법의 체포, 불심검문, 수사, 압수, 수색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한 조항이 없다. 다만, 경비업법 제7조에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경비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개념은 직접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명령·강제하는 행정작용을 가리킨다. 이러한 경찰권 발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권력작용이기 때문에 경찰작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한계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경찰작용에 의한 경비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경찰에 의한 경찰작용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경비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경비조직에 의한 경비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민간경비원들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원의 신분과 권한 등의 문제를 경비업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민간경비원의 실력행사, 심문, 질문, 수색에 관한 범위와 한계 등을 명백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경비업법 제7조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경비원들의 권한은 일반시민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는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일본 경비업법 제15조 참조).<sup>12)</sup>

민간경비원에게는 공경찰이 행사하는 체포권, 불심검문권, 압수, 수색, 수사 등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경비원들은 고객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종종 실력행사, 심문, 질문, 수색 등의 문제에 봉착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용의자의 동의하에 심문, 질문, 수색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과도한 폭력행사가 자행되었다면 이로부터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상·민사상의 책임을 저야한다. 현행법에 대한 체포도 사인으로서의 경비원은 체포할 권한을 가질 뿐이며(형사소송법 212조) 경비원으로서의 법적 체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sup>[12]</sup>

다만 경비업법 부칙 규정에 항공법 일부(항공법 61조 제5항 및 제6항)이 개정되어 경찰관에 의해 수행되던 공항에서의 여객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민간인인 특수경비원이 수행하고 있다.

민간경비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범인체포 등의 행위는 형법 제276조의 체포 감금죄를 구성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 밖에도 형법상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법 체포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만, 수사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사인적 지위를 가진 민간경비원의 활동에 의한 증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증거가 직접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다만 법적에서 소송 당사자에 의하여 증거로서 원용될 경우 이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헌법이 형사제도의 여러 부문에서 경찰 및 준경찰 조직에 대하여 많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권한은 민간경비원이 경찰과의 협력하에 활동하거나 경찰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 민간경비원에게도 적용된다.<sup>[13]</sup>

자 및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이 법률에 의해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고 있지 않음에 유의하는 것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거나 개인 혹은 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

12) 일본경비업법 제15조(경비업무 실시의 기본원칙) 경비업

## 5. 결 론

민간경비산업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거대사적 재산가의 등장 그리고 안전의식의 강화에 따라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그동안 공적인 치안인 경찰이 담당해왔던 치안기능 중 사전적·예방적 부문은 상당부분 민간경비로 넘어왔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도 특수경비업무의 등장은 민간경비의 사적인 업무영역의 한계를 넘고 공적인 영역에도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게 되었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민간경비는 이제 공경찰의 고유영역이라할 수 있는 범집행의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는 추세로 까지 진화하고 있다.

선진 각국은 국가 기능의 축소를 지향하면서 과거 국가 고유의 기능이었던 분야까지도 민간에 이양하고 있다. 치안에 있어서도 민간이양 혹은 위탁 등의 형식을 통해 국가는 민간의 치안자원을 치안 공동생산의 파트너로 인식한 지 오래다. 따라서 민간경비원에게도 업무분야별로 일정 자격을 갖춘 검정을 통해 준경찰권의 부여와 무기휴대 등 경비장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민간경비업계에서도 국가로부터 법률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 참고문헌

- [1] 정진환, 경찰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p.22. 2006.
- [2] 이윤근, '한국 사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56-57, 1989.
- [3] 안황권, '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사)한국경비협회 2013 민간경비전문가(학계)초청 대토론회 「개정 경비업법 문제점 및 대책」, p.17. 2013.
- [4] 안황권 외, 비교시큐리티제도론, 서울: 진영사, pp.2-23, 2007. ;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성남: 책사당, p.5, 2001.
- [5] 이윤근, '한국 사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8, 1989.
- [6] Arthur J.Bilek, Legal Aspects of Private Security,

Cincinnati, Ohio: Anderson Publishing Co., p.15, 1981.

- [7] 이윤근, '한국 사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8, 1989.
- [8] 이윤근, '한국 사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9, 1989. ; 안황권 외, 비교시큐리티제도론, 서울: 진영사, pp.98-99, 2007.
- [9] 이윤근, '한국 사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9-60, 1989. ; 안황권 외, 비교시큐리티제도론, 서울: 진영사, pp.99-100, 2007.
- [10] 안황권 외, 비교시큐리티제도론, 서울: 진영사, p.100, 2007.
- [11] 이윤근, '한국 사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61-62, 1989.
- [12] 김성언, 한국의 민간경비 : 성장과 함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248. 2002.
- [13] 김재광,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4-08, pp.149-150.

## [ 저 자 소 개 ]



서진석(Seo, Jin-Seok)

1987년 2월 인천대학교 행정학사  
 1992년 2월 인천대학교 행정학석사  
 2000년 2월 경원대학교 행정학박사  
 2002년 3월 ~ 현재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부교수

Email : woonlim@hanmail.net